

## 14. 韓國土地開發工事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915號 1996. 2. 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을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익시설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이라 함은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등 당해 조성용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사업수탁수수료의 요율) 공사가 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토지매매·관리의 수탁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공사가 토지매매·관리의 수탁을 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규모로 한다.

③공사가 토지의 매매를 수탁함에 있어 매각위탁자가 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 매각수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⑤공사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

별회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임대·처분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용지취득등의 위탁시행)”을 “(용지보상등의 위탁시행)”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20조 제1항”을 “법 제20조의2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법 제20조 제2항”을 “법 제20조의2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준공검사) ①공사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조서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토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지적대조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토지개발사업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자
5.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제40조의3(대집행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 제6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립사업용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이상인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의 일시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42조 본문중 “법 제23조의2 제1항”을 “법 제23조의3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토지공급대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

문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들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 제명 “사업위탁·수탁수수료의 효율의 기준표(제11조 및 제40조 제2항관련)”를 “사업위탁·수탁수수료의 효율의 기준표(제12조 및 제40조 제2항관련)”로 한다.

별표 3의 제명 “토지매매·관리의 수탁수수료의 효율의 기준표(제41조 제4항관련)”를 “토지매매·관리의 수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표(제30조 제4항 관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42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36조 제4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④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0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 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③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9조 제1항 제6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로 한다.

⑬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을 “한국토지공사사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

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도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2항 제3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3호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로 한다.

⑯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토지공사

⑰건설교통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제6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⑱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⑲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 제1항 및 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

다.

㉔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㉕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44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㉖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㉗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토지공사

㉘지방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 제4항 제1호중 “한국토지

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 ·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㉙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한국토지공사사장

㉚풍수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토지공사사장

㉛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

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토지공사

㉝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을 “한국토지공사사장”으로 한다.

㉔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

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㉕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 12. 29, 법률 제510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영 제10조의2).
-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40조의2).
-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의2 제2항).

〈법제처 제공〉